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7가합34752 판결 [주식매매대금 청구 등]

전 문

원고큐캐피탈파트너스 주식회사

피고A

변론 종결2018. 10. 25.

판결 선고2018. 11.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8. 11.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47,808,175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47,808,175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투자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당초 상호는 '주식회사 티지벤처'였다가 2004. 3. 8.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2001. 12. 26. 점포 판매시스템(POS System)의 생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및 그 대주주인 피고와 주식인수계약 및 주주 간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식인수계약 및 주주 간 약정서

제1장 주식인수계약

제2조(신주발행과 인수)

1) B은 다음과 같이 신주를 발행하고 원고는 B이 배정한 신주를 인수한다.

4. 금회 발행 신주의 내용

가. 종류와 수량 : 보통주 13,350주

나. 원고에 배정할 신주의 종류와 수량 : 보통주 13,350주

다. 주금 납입기일 : 2001. 12. 26.

라. 원고가 납입할 총 인수금액은 2억 25만 원(액면가 5,000원)으로 한다.

제4조(사전승인 사항)

B과 피고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을 원고로부터 사전승인 받아야 한다.

10. 사업 중단 또는 포기

제2장 주주 간 약정서

제15조(투자자금의 회수)

1) 원고는 투자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자기가 소유한 B의 주식을 주식인수일로부터 1년 이후 원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매각한다. (단서 생략)

2) (주식매각방법) 원고가 제1항에 의하여 원고 소유 주식을 매각할 경우 매각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고는 자기 소유주식을 우선적으로 B의 피고에게 매각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식매각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매입할 의무를 진다.

2. 매매가격은 원고와 피고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양자 간에 가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원고는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발효와 해지)

2) 본 계약 당사자 중 일방적으로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 체결의 기초가 된 사업계획서 또는 제4조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자 간의 분쟁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 또는 지연 방해된 때에는 상대방은 30일 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 통고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의무불이행 또는 계약해지원인이 된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B이 발행한 보통주 13,350주를 인수하고 주식인수대금 2억 25만 원을 납입하였다. 그 후 B이 2004. 9. 6. 무상증자를 하고 2004. 10. 26.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원으로 하는 주식분할을 하여 원고가 소유한 B의 주식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6년 10월 B의 사업을 중단하고 2017. 1. 10. 서울회생법원에 B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였다(2017하합4호). 위 법원은 2017. 2. 8. B에 대하여 파산선고 결정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위 파산신청에 대하여 사전에 원고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제15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소장 부분 송달로써 피고에게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인수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장부가액 247,808,175원에 매각 청구를 한다. 피고는 위 매각청구에 따라 원고로부터 위 주식을 양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247,808,17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약정 제15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인수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할 수 있고 피고는 위 매각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매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위 약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매매가격은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결정하고 가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원고는 제3자에게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원고의 주장처럼 주식의 매입가격을 장부상 가액으로 하기로 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다만 위 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매각통보가 있는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그 매입가격으로 보아야 할 여지는 있으나, 그 가격이 장부상 가액에 이른다고 볼 증거도 없고 달리 구체적 액수를 산정하여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서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제4조에 따라 '사업 포기 또는 중단'을 하는 경우 사전에 원고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원고의 사전승인 없이 B의 사업을 중단하고 파산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약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경영환경 등의 변화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을 뿐 자발적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한 것이 아니므로 파산신청에 대하여 원고의 사전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사의 파산신청은 회사의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상태뿐만 아니라 그 사업주의 사업 중단 또는 포기 결정을 당연히 수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약정 제4조는 주식의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경영상 행위에 관하여 사전에 원고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으로서 회사의 파산신청도 위 사전승인사항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는 피고가 B의 파산신청 전에 원고에게 승인을 받았더라면 원고가 최소한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장부상 가액

247,808,175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당시 B이 지급불능 및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고 이후 실제 파산선고를 받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파산신청 전에 원고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피고 또는 제3자에 매각하여 최소한 그 장부상 가액 이상을 회수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은 2016년 상반기까지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그 전 3년간에도 적지 않은 영업이익을 거두었으며 직원 50여 명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 적도 없었던 점, ② B이 2016년 하반기부터 급격한 영업실적의 악화와 대출금의 만기 도래로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어 피고가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사전에 이를 알았더라면 추가 투자 등을 통해서 상당기간 사업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 스스로도 자금압박에 시달리기 시작할 무렵 원고에게 추가 투자를 요청했었다고 주장하였는데(2017. 11. 6.자 준비서면 4면) 피고도 사업을 중단하기 전에 원고와 협의하였더라면 사업의 계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안의 성질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라고 보인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앞서 본 사실과 사정 및 B의 경영은 전적으로 피고가 담당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투자자로서 그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다만 원고도 스스로의 위험 아래 B에 투자한 것으로서 그 사업부진에 따른 손실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액을 이 사건 주식의 장부상 가액의 약 60% 정도인 1억 4,800만 원으로 인정한다.

다) 피고는 채무불이행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로서 원고에게 위 1억 4,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7. 7.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소장 부분 송달일부서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채무불이행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그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2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더라도 위 약정에서 정한 각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의사도 없으면서 위 약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투자금 247,808,175원을 편취한 것이므로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B은 2001년 12월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후로 10년 이상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다가 동종업체의 난립에 따른 경쟁심화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2017년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 9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거나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로 위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증거가 없다.

원고의 제2예비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예비적 청구의 인용액수가 청구액수의 3/5이지만 소송비용을 반드시 그 비율에 따라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8324 판결 등 참조) 당사자 간 주된 공방이 이루어진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배척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가 소송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우라옥

판사홍예연

판사이기웅

별지